◉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기 및 군용장비
2.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 지원, 훈련
3.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

제26조제2항제2호, 제3호 및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현행 제6호) 중 “UN총장”을 “UN사무총장”으로, “회원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군용장비,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지원, 훈련을 공급하는 경우

가.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을 포함하는 UN 인사

나.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AMISOM)

다.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AMISOM)의 전략적 파트너

라. 소말리아에 배치된 EU 훈련임무단(EUTM)

5. 소말리아 국민의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정부군 또는 여타 소말리아 치안기관의 육성을 위한 무기, 군용장비(별표 8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포함한다) 및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지원, 훈련 제공
6. 소말리아의 항구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에 머무는 경우로서 방어 목적의 무기, 군용 장비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 급조폭발물의 제조 또는 이의 관련 용도와 관련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2호를 같은 항 제4호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1.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배치된 EU 훈련임무단, 프랑스군 또는 제2호에 따라 훈련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2.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 개혁절차에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용 장비와 지원

3.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공동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차드、수단、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카르툼(Khartoum)에 설립된 3국간 군대가 국제순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51조제3항 제3호를 같은 항 제5호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현행 제4호를 같은 항 제6호로 변경하고,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변경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6호를 같은 항 제9호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현행 제7호는 삭제한다.

6. 소형무기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공급으로서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가(Sangha) 트리내셔널 지역의 보호를 위해 국제 정찰대가 사용하는 경우

나. 밀렵, 상아 및 무기 밀수를 방어하기 위해 친코 프로젝트(Chinko Project)와 바밍기-방고란(Bamingui-Bangoran) 국립공원의 무장 야생동물감시원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와 대조되는 활동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경 14.5mm 이하 무기와 이러한 무기용으로 전용 설계된 탄약과 부품

나. 비무장 지상 군용 차량 및 예비 부품

다. 구경 14.5mm 이하 무기가 탑재된 지상 군용 차량 및 예비 부품

라. 로켓추진유탄발사기(RPG)와 이를 위해 전용 설계된 탄약 그리고 관련한 지원

마. 동 무기를 위해 전용 설계된 구경 60mm 또는 82mm 탄약용 박격포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와 관련한 지원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 및 지원하기 위한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 및 관련된 살상용 장비

9.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의 기타 판매 또는 공급, 인력、지원 제공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 및 예멘 내 인도주의 기구의 업무 지원 목적인 경우

2. 기타 UN안보리 예멘 제재 결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인 경우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수출허가절차) ① 제5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4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에 면제 요청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장 제목을 “제16장 특별조치 적용 여부의 판정”에서 “제17장 특별조치 적용 여부의 판정”으로 변경하고, 제16장 제목을 “제16장 남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신설한다.

제55조를 제58조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제56조를 제59조로 변경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적용범위) 이 장은 남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구성품

2. 기술지원, 훈련 또는 여타 지원(무장용병 제공 포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군사활동

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유지보수、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및 유엔 아베이 임시안전임무단(UNISFA)을 포함하는 UN 관련 인사가 사용할 목적인 무기 혹은 관련 물품, 지원, 훈련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4. 국제법에 따라 남수단공화국에 있는 자국민 및 영사책임 대상자의 보호와 대피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군 병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무기와 관련 물품

5.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에 대항하는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연합 지역군(African Union Regional Task Force)이 사용할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지원

6.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지원

7.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의 기타 판매 또는 공급, 인력、지원 제공

제57조(수출허가절차) ① 제56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6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통보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장의 제목 “제17장 재검토기한”을 “제18장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한다.

별표 1, 별표 2의2, 별표 4,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과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2021-181호, 2021.11.1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와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